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(조명희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2068

발의연월일: 2020. 7. 16.

발 의 자:조명희·한무경·이태규

이 영ㆍ허은아ㆍ양금희

권은희 • 윤창현 • 배현진

강기윤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보호조치중인 보호대상아동의 친권자, 후견인 등이 가정복귀를 신청하는 경우 시·도지사,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아동복지시설의 장의 의견을 들은 후 아동의 복리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면 해당 보호대상아동을 가정으로 복귀시킬 수 있음.

그런데 보호자가 아동학대행위자인 경우에도 이러한 '원가정 보호 원칙'이 우선시 되면서 학대피해 아동이 가정으로 돌아가 재학대의 피 해를 입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.

이에 보호자가 아동학대행위자인 경우에는 아동학대 전문의료기관이 피해아동에 대하여 조치한 상담·치료 등의 결과를 고려하여 가정복귀를 결정하고, 아동학대행위자가 상담·교육·심리적 치료 등에 성실히 참여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되는 즉시 상담·교육·심리적 치료 등에 참여하도록 하여 아동의 보호

를 강화하려는 것임(안 제16조제3항 및 제29조의2).

법률 제 호

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아동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6조제3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이 경우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학대행위자인 경우에는 제29조의7에 따른 아동학대 전담 의료기관이 피해아동에 대하여 조치한 상담 및 치료 등의 결과를 고려하여야 한다.

제29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29조의2(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·교육 등) 아동학대행위자는 보장원의 장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이 정하는 상담·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한다. 다만, 상담·교육 및 심 리적 치료 등에 참여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되는 즉시 참여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혅 했 개 정 아 제16조(보호대상아동의 퇴소조치 제16조(보호대상아동의 퇴소조치 등) ①・② (생 략) 등) ①·② (현행과 같음) ③ 시・도지사 또는 시장・군 수・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가 정 복귀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아동복지시설의 장의 의견을 들은 후 보호조치의 종료 또는 퇴소조치가 보호대상아동의 복 리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인정 되면 해당 보호대상아동을 가 정으로 복귀시킬 수 있다. <후 -----. 이 경우 단 신설>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학대행위 자인 경우에는 제29조의7에 따 른 아동학대 전담 의료기관이 피해아동에 대하여 조치한 상담 및 치료 등의 결과를 고려하여 야 하다. ④ (생략) ④ (현행과 같음) 제29조의2(아동학대행위자에 대 제29조의2(아동학대행위자에 대 한 상담・교육 등의 권고) 보 한 상담 • 교육 등) 아동학대행 장원의 장 또는 아동보호전문 위자는 보장원의 장 또는 아동 기관의 장은 아동학대행위자에 보호전문기관의 장이 정하는 대하여 상담 • 교육 및 심리적 상담ㆍ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 것을 권고할 수 있다. 이 경우 아동학대행위자는 정당한 사유 가 없으면 상담・교육 및 심리 적 치료 등에 성실히 참여하여 야 한다.

치료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한다. 다 만, 상담ㆍ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에 참여할 수 없는 정당한 사 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되는 즉시 참여하여야 한 다.